# 인정학점 취득 시행 내규

제정2009.03.01. 개정2010.08.20. 개정2012.05.22. 개정2013.02.25. 개정2013.09.01. 개정2015.03.30. 개정2016.09.12. 개정2017.03.01. **개정2017.08.01.** 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 제3항 및 학칙시행세칙 제51조에서 규정한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05.22.><개정 2013.09.01>

제2조(적용교과목 범위) 제1조의 인정학점을 취득 할 수 있는 인정교과목 현황은 <별표 1>과 같다.<개정 2013.09.01>

#### 제3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<개정 2017.03.01> <삭제 2017.08.01.>

②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를 실시한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〈별표1〉사회봉사영역의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해외봉사를 마친 후〈별표서식 1>의「인정학점 취득신청서」및 관련 증빙 서류를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5.22.><개정 2013.09.01>

- ③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3항에 따른 교류학점 인정은 학칙시행세칙 제24조를 따른다.
- ④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4항에 따른 현장실습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<별표서식 2>의 「현장실습 학점인정 사전승인서」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(학과장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종료후 <별표서식 3> 「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」, <별표서식 4> 「현장실습 근무평가서」, <별표서식 5> 「현장실습 결과보고서」, <별표서식 6> 「현장실습 일일 근무일지」를 취합하여 학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(학과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09.01> ⑤학칙시행세칙 제51조 제5항에 따른 인턴십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〈별표1〉인턴십프로그램 영역에서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후 <별표서식 1>의「인정학점 취득신청서」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 취업지원과에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5.22.</p>

#### 제4조(학점인정기준) ①<삭제 2017.08.01.>

②제3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별표<별표 1의 2>와 같다.<개정 2012.05.22.><개정 2013.09.01>

- 1. 사회봉사 학점인정은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봉사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.
- 2. 해외봉사는 30시간 이상 해외봉사 시 2학점을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재학 중 최대 4학점까지만 인정 한다.<개정 2013.09.01.>

- 3. 성적은 pass/nonpass로 평가 하고 평점평균에는 반영 하지 않는다.<개정 2013.09.01.>
- ③제3조 제4항에 따른 현장실습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, 취득한학점의 인정은 <별표 1의 3>과 같이하고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개정 2013.09.01.> <개정 2015.03.30.>
  - 1. 현장실습에 따른 학점 인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으로 한다.
    - 상장기업
    -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
    -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·기관·시설
    - 기타 인턴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
  - 2. 8학기 재학생부터 신청가능하며,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  - 3. 현장실습 학점인정 근로 기간은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.
  - 4. 현장실습 학점 당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    - 현장실습 I: 3학점×주 40시간 : 120시간 이상
    - 현장실습Ⅱ: 6학점×주 40시간 : 240시간 이상
    - 현장실습Ⅲ: 6학점×주 40시간 : 240시간 이상
  - 5. 현장실습 최대 인정 학점은 15학점까지로 한다.
  - 6. 현장실습은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  - 7. 현장실습 학점에 대해서는 Pass/NonPass로 처리한다.<개정 2013.09.01>
- ④제3조 제5항에 따른 인턴십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학기 학점으로 <별표 1의 4>와 같이 인정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 - 1. 인턴십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의 소정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.
  - 2. 인턴십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.
  - 3. 국내인턴십 프로그램은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3학점을 인정한다.
  - 4.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취득한 학점은 Pass/NonPass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- ⑤학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해외어학 연수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<별표 1의 5> 에 따르며,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1.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은 본교와 협약을 맺은 자매대학 및 자매대학 부설기관과 그 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어학연수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. <개정 2010.8.20>
  - 2. 1과목 2학점으로하여 재학 중 최대 4학점까지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2.5.22.>
  - 3. 연수성적은 Pass/NonPass로 하고,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  - 4. 해외어학연수는 30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 <개정 2012.5.22><개정 2013.09.01>
  - 5. 연수대학에서 통보된 성적이 Pass/NonPass로 표시된 경우는 그대로 인정하고, 실점수로 통보된 경우는 60점 이상을 Pass로, 60점미만은 NonPass로 한다. <개정 2010.8.20>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인정학점 취득 시행 교과목 연황 및 성적 인정 기준

1.-1 외국어 영역<삭제 2017.08.01.>

<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1항>

- ※ 2017.03.01.부터 토익1,2, 기초독일어, 여행독일어, 기초일본어, 생활일본어, 기초중국어1,2, 생활중국어 폐지
- ※ 2017.08.01.부터 실용영어1,2(택1)(TOEFL (IBT기준), TOEIC) 폐지
- 1-2. 컴퓨터 영역<삭제 2017.08.01.>

※ 2017-2학기(2017.08.01.)부터 엑셀, 파워포인트(PCT 2급자격증, ITQ 엑셀, ITQ 파워포인트, MOS 엑셀, MOS 파워포인트, e-TEST 엑셀, e-TEST 파워포인트, 컴퓨터활용능력) 폐지

#### 2. 사회봉사

## <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2항 >

인정교과목	학점	시간	이수구분	성적평가
해외봉사 1	2	30시간 이상	교양선택	Pass
해외봉사 2	2	30시간 이상	"	"

## 3. 현장실습

## <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3항 >

인정교과목	학점	시 간	이수구분	성적평가
현장실습ㅣ	3학점	120시간 이상	전공선택	Pass
현장실습Ⅱ	6학점	240시간 이상	"	"
현장실습Ⅲ	6학점	240시간 이상	"	"

## 4. 인턴십 프로그램

## <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4항 >

구분	인정교과목	학점	시 간	이수구분	성적평가
	취업아카데미1 취업아카데미2	교양선택	Pass		
국내	취업아카데미3 취업아카데미4	3	200시간 이상	전공선택	u
	청년직장체험 기업체 예비 취업	3	150시간 이상	전공선택	"
	글로벌인턴십1	3	120시간 이상	자유선택	u
국외	글로벌인턴십2	6	240시간 이상	자유선택	"
	한미대학생 교류(WEST)	12	470시간 이상	전공선택	"

## 5. 해외어학연수

## < 인정학점 취득내규 제4조 제5항 >

인정교과목	학점	시간	이수구분	성적평가
해외어학연수 1	2	30시간이상	교양성택	Pass
해외어학연수 2	2	30시간이상	교양성택	Pass

# 인 정 학 점 취 득 신 청 서

1. 신청자	1. 신청자 인적사항						
학투	부(과)			생년월일	!		
성	명			학 년	번	학	년
<b>연</b> :	락 처	(자택)			(휴대폰	)	
2. 인정학점	점취득 신청!	내역					
구 분				인정학점	Ы	고(등	급)
해외어흐	박연수						
인턴십 프	로그램						
사회동	를 사						
3. 수강신청	청과목명						
이수구분	학수번호	분반	인정교과목명	학점	시간	담당교수명	교시

첨부서류 : 1.

인정학점취득시행내규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점인정을 받고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 자 : (인)

## [별표서식 2]

# 현장실습 학점인정 사전 승인서

#### 1. 신청자 인적사항

소속대학(부	-)	소속학과(부)	학 번		성 명	학년
연락처			E-Mail			
근무기업			근무부서			
근무 예정기간		년 (총	월 일 <sup>~</sup> 주	년 시 <i>ጚ</i>	월 일 간 근무함)	
근무 예정내용						
교과목명	신	한연계현장실습	학점인정학기		학년도	학기
학점수			학과장 확인			(인)

- ※ 현장실습(인턴십)을 학점인정받고자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.
- ※ 학점인정학기의 총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.

#### ※ 첨부자료: 근무(예정)기업체 확인서 또는 그 외 증빙자료

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과 같으며, 이와 같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, 종료 후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: (인)

# [별표서식 3]

# 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

### 1. 신청자 인적사항

소속대	대학(부)	소:	속학과(부)	학 번		성	명	학년
연락	처			E-Mail				
근무기	1업			근무부서				
근무기	]간		년 (총	월 일 ~ 주	년 시	월 일 간 근무함		
근무니	8							
교과독	구명	산학연계	현장실습	학점인정학기		학년.	도	학기
학점	·	성적		학과장 확인				(인)

※ 성적평가는 Pass(P) 또는 Fail(F) 방식을 원칙으로 함.

0	치므	ᄮ	=	보토
2.	첨무	_^`I	듀	녹독

|--|

□ 현장실습 근무평가서(기업 평가자 작성)

위의 내용은 모두 사실과 같으며, 이와 같이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: (인)

# [별표서식 4]

# 현장실습 근무평가서(기업 평가자)

# 1. 학생 인적 사항

성명	대학교명	
주민등록번호	- 단과대학/학과(부)	
근무기업명	근무부서명	
근무	년 월 일 ~ 년 월 일	
기간	총 주 시간 근무함	
인턴		
담당업무		

## 2. 인턴 학생 평가 사항

	매우 낮음	낮음	보통	높음	매우 높음
성실성(근태포함)					
책임감					
업무수행능력					
조직융화력					
창의력					
적극성					
발전 가능성					

2	そは	(하세이	자 저	디	보완점을	주시 6 교	١
. ``	<del>-</del>		- 22 AH		セギツラ	大名りた	,

## 4. 평가자 정보

성명	부서명/직위	
전화번호	이메일	

[작성일]년월일[평가자 확인](인)

# [별표서식 5]

# 현장실습 결과보고서(학생용)

성명		학번	
소속대학		소속학과	
학년		연락처	
근무기업명		근무부서명	
근무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기업담당자명 및 연락처	

결과보고서 (자유 형식, 사진 제외 2~5장 내외, 폰트 10)

# 일일근무일지

20		요일	날씨:

연구과제제목		
1.업무내용		
2. 주요관찰내용(이론과의	리 관련성 및 현장업무에 대 <sup>*</sup>	한 소견)